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39
----------	-------

제안연월일 : 2026. 4.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상정	소위 심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946	안태준 의원 등 11인	'24.12.27.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 2.18.)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6. 3.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375	권영진 의원 등 10인	'25.01.10.	상정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 4. 9.)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6. 3.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46	관영찬의원· 복기왕의원 등 24인	'25.12.02.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6. 2.10.)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6. 3.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85	복기왕의원· 이종욱의원 등 11인	'26. 3.27.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6. 4. 1.)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26. 4. 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2)는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시의·고속버스는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나 최근 고속철도망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 등으로 승객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높지 않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폐선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의·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유류구매비용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선 유지, 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중개요금 조정 등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영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11호 신설).
- 라.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9조의20 신설).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배차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중개 서비스 요금의 조정,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

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1 신설).

바. 시·도지사 등은 운송사업자가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및 유류 구매 비용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제3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0조의3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 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요성,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

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거나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한 요건·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

제49조의18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4장의2에 제49조의20 및 제49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와 여객을 연

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4. 사업계획의 변경
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0조제1항제2호 중 “수익성이”를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일부를”을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시

· 도지사”로 한다.

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제51조의2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51조의5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중 “제49조의14”를 “제49조의14, 제49조의21”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2호 중 “제44조 또는 제49조의7”을 “제44조·제49조의7 또는 제49조의21”로 한다.

제9장에 제8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5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5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

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 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

요성,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거나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장거리 필

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한 요건·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정보 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  
-----  
-----  
-----  
-----  
-----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명할 수 있다.

1. ~ 10. (생략)

<신설>

② · ③ (생략)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  
송중개사업의 등록) ① 여객자  
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신설>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장  
거리 필수노선의 운행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  
송중개사업의 등록) ① -----  
-----  
-----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  
송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

<신 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  
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  
치

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  
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  
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  
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  
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명할 수 있다.

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  
치

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  
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4. 사업계획의 변경

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

제50조(재정 지원) ① -----  
-----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상당하는 금액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79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

-----.

<삭제>

제79조(보고·검사 등) ①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p>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 41. (생략) ② ~ ④ (생략) <u>&lt;신설&gt;</u></p>	<p>----- ----- 23. ~ 4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제3항 및 제76 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 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 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 로 본다.</u></p>
---	--